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의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귀하

국정에 여념이 없는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하여, 유엔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전쟁범죄를 포함한 비인도적 범죄에 대해 시효를 정하지 않고 끝까지 범죄자를 추적하고 처벌하도록 하는 국내외적인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전범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국이 아니더라도 전범에 대한 국제사회의 처벌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령의 나찌전범에 대한 처벌이 계속되는 사실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와는 달리 아시아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최대 가해국인 일본전범에 대해 범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피해국가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얼마간의 배상을 받았지만 개인 희생자들에게는 명예회복과 배상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나이 어린 여성을 강제연행하여 일본군의 성노예로 취급했던 일본군'위안부'문제가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인권은 어떤 경우에도 부정될 수 없으며, 이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의입니다.

5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일본군'위안부'문제는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범죄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1996년 제52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일본군'위안부'문제는 나이 어린 여성을 성노예화한 것으로 강제연행과 강제 성노예생활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임과 동시에 전쟁범죄임을 분명히 하는 보고서를 채택하고, 일본정부에 대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국가배상, 교과서 게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권고를 채택한 바 있으며 올해도 일본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협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위안부'제도가 강제노동금지규약위반이라는 지적을 하였고,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여성지위위원회, 그

리고 제네바협약의 이행을 다루는 국제적십자위원회 역시 성노예 제도로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범죄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1996년 12월 미국 법무부는 일본군'위안부'강제연행과 731부대 범죄에 관여한 일본 전범의 출입국을 금지한 바 있으며, 22명의 미국 하원의원이 이 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만정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해 대만정부가 피해자에게 일괄 배상하고 일본정부에 대한 배상요구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으며, 중국은 일관되고 일본정부가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군'위안부'범죄의 최대 피해국인 우리 국회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진실규명,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의 일환으로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하여 일본전범들의 출입을 금지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아시아 여러나라의 피해자와 피해국에게 커다란 용기가 될 것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피해국들이 일본과 보다 진전된 외교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왜 과거사에 매달리느냐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라는 의견도 있는 줄 압니다. 일본군'위안부'문제는 한-일간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시기에 있었던 특정 범죄행위에 대한 응징을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나아가 잔혹한 범죄의 재발을 막고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인류의 공동과제를 이행하려는 현재의 문제이며,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법안 내용을 검토하시고, 법안개정의 발의의원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7. 9

국회의원 이 미 경 드림